

#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오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66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8. 24.

발의자 : 오영훈 · 김상희 · 유은혜  
신동근 · 김병욱 · 이석현  
안민석 · 전재수 · 김민기  
조승래 · 박경미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

대학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을 법인의 형태로 둘 수 있으며,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음. 또한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동법 제34조제3항에서 “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,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”고 규정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고용된 연구원 및 직원은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으며,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. 하지만 산학협력단에서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은 「한국교직원공제회법」이 정하는 회원자격에서 제외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

임.

## 주요내용

가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각 대학이 설치한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에 추가함(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 신설).

##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회원자격) ① (생 략)	제7조의2(회원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11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</u>
<u>11. (생 략)</u>	<u>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